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12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곽규택 · 조승환 · 박지원
김용태 · 유상범 · 신성범
김상훈 · 강대식 · 배준영
강승규 · 조지연 · 강명구
서천호 · 최은석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u>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을</u> <u>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u> <u>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u> <u>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u> <u>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u> <u>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u> <u>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u> <u>조하여야 한다.</u>